

법학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이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)라 칭하고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2 조 (목적 및 기능) ① 이 연구소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법률문화의 창달과 정책연구 및 법률구조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이론 및 법학연구에 관한 사항
2. 연구발표회·강연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
3. 타 연구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
4.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
5. 각종 연구발표 내용의 간행과 배포에 관한 사항
6. 특수연구과제에 관한 사항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2 장 기 구

제 3 조 (조직) ① 연구소에 연구조사부·간행부 및 법률상담실을 둔다.

② 각 부와 실에 부장 및 실장을 두고,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조사부는 연구사업의 수행과 발표 및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분장한다.

④ 간행부는 연구자료의 수집·정리와 논문집 기타 출판부 등 간행업무를 분장한다.

⑤ 법률상담실은 법률상담 및 법률지식의 보급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.

⑥ 연구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임원) ①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, 명예소장 : 각 1인
2. 운영위원 : 7인 이내
3. 연구위원 : 25인 이내
4. 간사 : 1인

②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소장) ①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5.09.01.)

② 명예소장은 객원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09.01)

제 6 조 (운영위원) 운영위원은 본교 법학전공 교수로 이루어진다.

제 7 조 (연구위원) ①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으로서 상임연구원·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상임연구원은 법학전공 교수로 이루어진다. 다만, 연구원은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수료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
③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또는 법조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.

제 8 조 (간사) 간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고, 연구소 내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3 장 운영 위원회

제 9 조 (설치)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본교 법학전공 교수들로 구성된다.

제10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1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연구활동 및 보고

제12조 (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) 연구소는 연1회 이상 연구위원의 학술연구 및 세미나의 발표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에게도 연구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.

제13조 (논문집) ① 연구소는 연1회 이상 학술논문집을 발간한다.

② 논문의 게재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연구위원의 논문에 한한다. 다만, 외부인사의 논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정 및 회계

제14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(개정 2015.09.01)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제15조 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5 장 폐 소

제16조 (해산)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(신설 2015.09.01)

제 6 장 보 고

제18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9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20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